

운영규정의 개요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1.입소정원	의정부사랑마루의 입소정원은 39명으로 한다.	제 7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 2조 (입소정원)
2.입소계약	1.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제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단, 센터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아래)세부내역(30일 기준)참조	제 7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 9조 (계약기간)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3.의료이용 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혈압, 체온, 혈당, 체중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 - 촉탁의사는 1주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검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한다. - 촉탁의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 36조 (의료서비스 절차)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3.의료이용 절차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병기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려 진료를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 7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 36조 (의료서비스 절차)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4. 시설물사용 주의사항	-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장 입,퇴소 관리규정 제 18조 (시설물 배상)